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5.10.14(수) 10:00

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
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신선기

**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
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**

1. 발의자 : 박우양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5년 10월 2일

나.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5일

3. 제안 이유

-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운용 중인 조례의 기금존속 기한이 2015년까지로 되어 있음
- 이에 동 조례의 상위 법령인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 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 조례의 기금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함(안 제3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